

# 직제규정



## 직제규정

전부개정	2007.	7.	12
일부개정	2009.	3.	27
일부개정	2010.	2.	11
일부개정	2011.	3.	30
일부개정	2011.	12.	14
일부개정	2012.	3.	29
일부개정	2012.	12.	26
일부개정	2015.	3.	27
일부개정	2015.	12.	28
일부개정	2016.	3.	29
일부개정	2017.	3.	29
일부개정	2017.	12.	22
일부개정	2018.	8.	29
일부개정	2018.	12.	19
일부개정	2019.	12.	11
일부개정	2020.	3.	24
일부개정	2021.	6.	3
일부개정	2021.	7.	26
일부개정	2022.	3.	28
일부개정	2023.	3.	29
일부개정	2023.	12.	21
일부개정	2024.	12.	27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울산테크노파크(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조직과 구성원 및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인의 조직과 구성원 및 직무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 직제규정

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조직관리)** 원장은 관장업무와 조직권한의 행사, 직원의 활용 등에 있어 항상 유효적절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조직기능이 효율적으로 발휘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2장 조 직

**제4조(조직)** ① 법인의 조직은 원장 산하에 정책기획단, 기업지원단, 기술지원단(정관제26조를 의미함), 직할부서를 둔다.<일부개정 2010.2.11.,2012.12.26.,2015.3.27.,2015.12.28.,2018.12.19.,2023.3.29.>

② <신설 2010 2. 11<삭제 2012.12.26>

③ 기술지원단으로 자동차기술지원단, 첨단화학기술지원단, 에너지기술지원단을둔다.<전부개정 2012.12.26., 2015.3.27.<일부개정 2015.12.28.,2018.12.19.,2024.12.27.>

④ 직할부서로는 감사실, 미래전략혁신본부, 이차전지기술지원본부, 지산학협력추진본부, 경영지원본부를 둔다.<신설 2015.12.28.<일부개정 2016.3.29.,2018.12.19.,2020.3.24.,2021.6.3.,2021.7.26.,2023.3.29.,2023.12.21.,2024.12.27.>

⑤ 조직도는 [별표1]과 같으며, 각 조직의 하부조직 체계는 원장이 별도 정한다.<신설 2018.12.19.>

⑥ 원장은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시조직을 둘 수 있으며 임시조직 신설과 폐지의 경우 제13조의 예외로 한다.<신설 2015.12.28.<조번호변경 2018.12.19.>

**제5조(구성원)** ① 법인의 구성원은 임원, 직속부서장, 직할부서장 및 직원으로 구성하고 상근임원은 원장으로 한다.<일부개정 2010.2.11., 2012.12.26., 2016.3.29., 2018.12.19.,2023.3.29.>

② 직속부서장, 직할부서장은 부서장이라 한다.<신설 2018.12.19.<일부개정 2023.3.29.>

**제6조(직급별 정원)** ① 직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2]와 같다.

② 원장은 직급별 정원 범위 내에서 직속부서장과 협의하여 부서별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0.2.11.,2023.3.2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별표2와 별개로 별도 정원으로 관리 할 수 있다.<신설 2017.12.22.>

**제6조의2(직급별 정원관리)** ①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군별 하위직급의 정원을 통합·운영 하며 직급별 정원은 원장이 별도 정한다.

② 제1항의 하위직급은 4급, 5급, 6급으로 한다.

③ 임금피크제대상자의 직급은 임금피크제 직전 직급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7. 12. 22. [본조신설 2015.12.28.]>

**제7조(이사장)**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원장)** 원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모든 사업의 최종 책임자로서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총괄하고, 나아가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진다.

**제9조(직속부서의 장)** ① 직속부서장은 원장의 지휘 하에 각 부서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진다.<일부개정. 2010 2. 11, 2012. 12. 26>

② 직속부서장은 부서장추천위원회(연구소장 및 부설기관장은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원장이 임명한다.<일부개정. 2010 2. 11, 2012. 12. 26, 2015. 3. 27, 2018. 8. 29>

**제10조(부설기관의 장)** <신설. 2010 2. 11> <삭제 2012. 12. 26>

**제11조(직할부서장)** 직할부서장은 원장이 1급 또는 2급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조명칭변경 및 신설 2018. 12. 19.>

**제12조(하부조직의 장)** 원장은 제4조의 부서 아래에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조번호개정. 2010 2. 11>,<조명칭변경 2011. 12. 14, 2018.12.19.> <일부개정 2011. 12. 14, 2012. 12. 26, 2018.12.19>

**제13조(직제개편 및 정원조정)** 법인이 직제(별표1)를 개편하거나 정원을 조정하고자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울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조번호개정. 2010 2. 11> <일부개정 2018. 12. 19>

### 제3장 업무분장 및 위임

■ 직제규정

**제14조(업무 분장)** 법인의 각 조직은 원장이 정한 업무분장표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며, 조직 간의 관련 업무는 미리 해당 부서와 협의함은 물론 조직 상호간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0 2. 11, 2015. 3. 27>

**제15조(업무의 귀속)** 업무분장에 있어서 그 한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업무는 관련부서 상호간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장이 관장 부서를 지정한다.<조번호개정. 2010 2. 11>

**제16조(권한과 책임)** ① 각 부서장은 업무분장표에서 정하는 업무에 따라 집행할 권한과 의무가 있고 그 처리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법인의 전 직원은 타 부서에서 처리하는 업무를 존중하고 필요한 경우 업무활동이 유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조번호개정. 2010 2. 11>

**제17조(위임전결)** ① 이사장은 사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인 사무로서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권한을 원장에게 위임한다.

② 원장은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경영의 원칙에 따라 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위임전결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조번호개정. 2010 2. 11>

## 부 칙<개정 2007. 7.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정관시행일과 같이 한다.

**제2조(명칭변경에 따른 규정등의 개정)** 법인 직제 명칭 변경 등 정관개정에 따라 제규정 및 규칙 중 “테크노파크사업단” 을 “기업지원단” 으로, ” 행정지원실 “을 ” 경영지원실 “로 한다.

## 부 칙<개정 2009. 3.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은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명칭변경에 따른 규정등의 개정)** 정관개정에 따라 제규정, 제규칙, 제지침의 제명 중 “재단법인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 를 “울산테크노파크” 로, 내용중 “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 를 “울산테크노파크” 로 한다.

**제4조(타 규정 규칙의 개정)** 이사회 규정 제6조의 “기업지원단장” 을 “정책기획단장” 으로 하고, 제11조의 “행정지원실장” 을 “경영관리실장” 으로 하고, 운영위원회 규정 제11조의 “행정지원실장” 을 “경영관리실장” 으로 하고, 원장추천위원회 규정 제6조의 “행정지원실장” 을 “경영관리실장” 으로 하고, 부서장추천위원회 규정 제6조의 “행정지원실장” 을 “경영관리실장” 으로 하고, 부서장성과평가위원회 규정 제5조의 “행정지원실장” 을 “경영관리실장” 으로 한다.

**부 칙<개정 2010. 2.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의 시행은 정관시행일과 같이한다.

**부 칙<개정 2011. 3.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1. 12.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2. 3. 29>**

**제1조(순차적 정원 조정)** 별표2의 6급 1명, 5급 1명의 증원은 2012.7.1이후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은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2. 1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 3.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 3. 29.>**

■ 직제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7. 3.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7. 1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8. 8.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정관시행일과 같이한다.

부 칙<개정 2018. 12.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 규정·규칙적용) ① 직제규정개정에 따라 제 규정, 규칙, 지침의 제명 및 내용 중 “자동차부품기술연구소”는 “자동차기술지원단”로, “정밀화학소재기술연구소”는 “정밀화학소재기술지원단”로, “에너지기술연구소”는 “에너지기술지원단”로 한다.

② 이사회규정 제6조 2항 “정책기획단장”을 “원장이 별도 정함”로 동 규정 제11조 2항 “경영관리실장”을 “원장이 별도로 정함”로 “경영관리실”을 삭제하고 운영위원회규정 제11조 1항 “경영관리실장”을 “원장이 별도 정한다.”로 한다.

② 인사관리규정 제3조 17호 “직속부서장, 부설기관장”을 “직속부서장, 부설기관장, 직할부서장”로 동 규정 제8조 5항 “경영관리실장이 하고”를 “원장이 별도 정하고”로 원장추천위원회규정 제6호 2항 “경영관리실장이 된다.”를 “원장이 별도 정한다.”로 부서장추천위원회규정 제6조 2항 “경영관리실장이 된다.”을 “원장이 별도 정한다.”로 연구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 2항 “센터장”을 삭제한다.

③ 재산관리규칙 제4조 1항 “기업지원단장”을 “해당업무 부서장”로 동 규칙 제6조 2항 “기업지원단장”을 “해당업무 부서장”로 회계관계직원재정보증규칙 제7조 “기업지원단장”을 “해당업무 부서장”로 사무관리규칙 제3조 2항 “정책기획단장”을 “해당업무 부서장”로 차량관리규칙 제3조 1항 “기업지원단장”을 “해당업무 부서장”로 한다.

**부 칙<개정 2019. 12.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0. 3.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1. 6.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장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는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 규정·규칙 등적용) 직제규정개정에 따라 제 규정, 규칙, 지침의 내용 중 “행정지원실”은 “경영지원본부”로, “행정지원실장”은 “경영지원본부장”로 한다.

**부 칙<개정 2021.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장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 규정·규칙 등적용) 직제규정개정에 따라 제 규정, 규칙, 지침의 내용 중 “행정지원실”은 “경영지원본부”로, “행정지원실장”은 “경영지원본부장”로 한다.

**부 칙<개정 2022. 3.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3. 3.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장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 규정·규칙적용) ① 인사관리규정 제3조 19호 “일반직, 연구직”을 “연구직”로 동 규정 제17조 1항 “연구직군, 일반직군”을 “연구직군”로 직군 구분없이 통합 관리 한다.

② 인사관리규칙 제3조 1항 “연구직 및 일반직”을 “연구직”로 동 규칙 “제12조의 2(직군전환)”을 직군 통합운영관리로 삭제하고, 동 규칙 제16조 1항 “연구직, 일반직”을 “연구직”로 동 규칙 [별표1] “연구직 및 일반직”을 “연구직”로 한다.

③ 직원근무성적평정규칙 제3조 1항 “연구직, 일반직”을 “연구직”로 한다.

■ 직제규정

④ 위촉직임용등에관한관리지침 [별표2] “연구직·일반직”을 “연구직”로 한다.

**제3조(부설기관장 조치사항)** 이미 채용된 부설기관장은 임기동안 별도정원으로 관리한다.

**부 칙<개정 2023. 12.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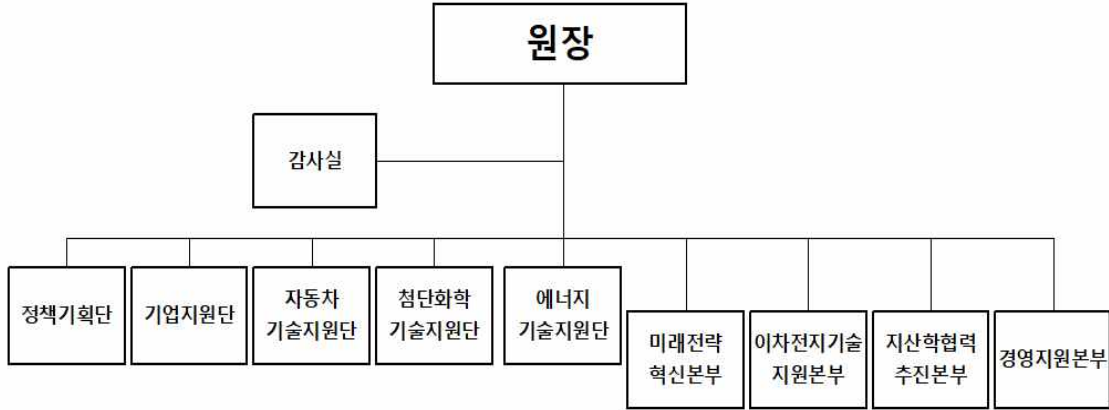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4.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 규정·규칙 등적용)** 직제규정개정에 따라 제 규정, 규칙, 지침의 내용 중 “정밀화학소재기술지원단”은 “첨단화학기술지원단”으로, “지역산업육성본부”는 “미래전략혁신본부”로 한다.

[별표1] <일부개정. 2010.2.11., 2011.12.14., 2012.12.26., 2015.3.27, 2015.12.28, 2016.3.29., 2018.12.19., 2021.6.3., 2021.7.26., 2023.3.29., 2023.12.21., 2024.12.27.>



[별표2] <전부개정 2009.3.27., 2010.2.11., 2011.3.30., 2012.3.29., 2012.12.26., 2015.12.28., 2016.3.29., 2017.3.29., 2018.8.29., 2018.12.19., 2019.12.11., 2020.3.24., 2021.6.3., 2022.3.28., 2023.3.29. 2023.12.21.>

### 직급별 정원표

계	원장	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	구분	소계	1급	2급	3급	4급·5급·6급	비고
114	1	5	연구직	108	6	19	37	46	

※ 부서별 정원은 원장이 별도 정함.  
 ※ 상기 정원 외 무기계약근로자 : 49명

■ 직제규정

[별표3] <신설. 2010. 2. 11> <일부개정 2011. 12.14, 2012. 12. 26> <삭제 2015. 3. 27>